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노진영 전화 062-231-4332/팩스 062-231-4951 보도자료 2023. 9. 11.(월)

제 목

광주·전남 제3회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조합장선거사범 수사 결과

- 입건 301명·기소 154명, 당선자 17명 기소 -

- 광주지방검찰청(검사장 박종근)과 산하 4개 지청은, '23. 3. 8. 실시된 제3회 농협・수협・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(이하 조합장선거) 사범 총 301명을 수사하여, 그 중 154명(6명 구속)을 기소하였음
 -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212명(70.4%), 기타(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부정선거운동 등) 58명(19.3%), 흑색선전 31명(10.3%) 순이며, 구속된 6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임
 - 당선자는 총 39명을 수사하여 그 중 17명(구속1·불구속 16)을 기소함
 - 고소・고발 비율은 44.9%로 제2회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
- 광주지방검찰청은 **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**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

① 광주·전남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[지청 포함]

1. 입건 및 처리 현황

구 분	입건(구속)	기소(구속)
제3회(2023)	301명(6명)	154명(6명)
제2회(2022)	238명(8명)	148명(8명)

- 광주·전남 지역 제3회 조합장선거사범은 **총 301명**으로 <u>제2회(238명)</u> <u>대비 26.5% 증가</u>하였음
- 2. 당선자 입건 및 기소 현황
- **당선자**는 **총 39명**을 수사하여 <u>그 중 17명(구속 1·불구속 16)을 기소</u>하였음
 - ※ 기소(명): 광주지검 10, 순천지청 5, 해남지청 2

3. 유형별 입건 현황

구 분	전체	금품선거	흑색선전	불법선전	기타
제3회	301명	212명 (70.4%)	31명 (10.3%)	0명 (0%)	58명 (19.3%)
제2회	238명	163명 (68.5%)	40명 (16.8%)	2명 (0.8%)	33명 (13.9%)

- 유형별로는 <u>금품선거사범이 70.4%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</u> <u>차지하였고</u>, 흑색선거사범은 10.3%로 제2회 조합장선거(16.8%)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
 - ※ 금품 제공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, 연고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사회 특성 등으로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많은 것으로 분석

4. 단서별 입건 현황

구 분	입 건	인 지	고소·고발
제3회	301명	166명 (55.1%)	135명 (44.9%)
제2회	238명	113명(47.5%)	125명(52.5%)

○ 고소·고발 비율은 **44.9**%로 <u>제2회 조합장선거사범(52.5%)에 비해</u> 다소 감소하였음

② 향후 계획

- <u>금품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</u>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임
-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<u>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</u>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
- 한편 2024. 4. 10.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,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・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
 - ※ '제3회 조합장선거사범 주요 수사 사례' 별첨

[별첨]

제3회 조합장선거사범 주요 수사 사례

① 조합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사례

- 조합원 20명 및 마을 이장에게 합계 1,735만 원을 제공한 甲농협 조합장 당선자 A 및 측근 구속 기소, 금품제공 가담자 2명 불구속 기소, 금품수수 조합원 16명 불구속 기소 (광주지검)
 - ※ 당선자 A 및 측근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으나(도주·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),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구속(2명)
- 조합원 12명에게 합계 1,650만 원을 제공한 乙축협 조합장 낙선자 B 및 측근 구속 기소, 금품제공 가담자 1명 불구속 기소, 금품수수 조합원 4명 불구속 기소 (광주지검)
-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전화 또는 호별방문하여 丙축협 조합장 후보자(당선자)의 지지를 부탁한 지지자 C 구속 기소 (광주지검)
- 丁 농협 조합장 당선자 D가 丁 농협 비상임이사 E와 공모하여 불법 선거 조직을 결성한 다음 총 18회에 걸쳐 조합원 116명에게 합계 3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,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약 1,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사건에 대하여,
 - 비상임이사 E는 구속 기소하고, 당선자 D와 범행에 가담한 전 조합장 F, 전 상임이사 G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, 범행에 가담한 마을이장 H 등 17명은 약식기소 (순천지청)
 - ※ 당선자 D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
- 조합원 12명의 주거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 명의의 생일선물세트를 교부하면서 음료수를 제공한 戊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 (해남지청)

- 근농협 조합장 낙선자 I와 근농협 영농회장 J가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송치된 사안에서, I와 J 사이 통화내역 분석하여 I와 J 사이 공모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, 압수된현금을 대검 DNA 분석 의뢰하여, 현금에서 J의 DNA 확보하는 등과학수사를 통해 I는 불기소, J는 불구속 기소 (목포지청)
- 조합원 1명에게 선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며 현금 40만 원을 교부한 출마예정자(출마 포기) 등 2명 불구속 기소 (장흥지청)

② 허위사실공표 사례

○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1,4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두 차례에 걸쳐 우편 발송한 조합원 1명 불구속 기소(광주지검)

③ 사전선거운동 사례

○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 14명의 주거지·비닐하우스 등을 호별방문 하여 지지 호소한 庚 농협 낙선자 불구속 기소(광주지검)

④ 선거운동 주체위반 사례

○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 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200~500여명에게 辛농협 조합장 후보자(당선자)의 지지 호소한 당선자 아내・처형 불구속 기소(광주지검)

5 선거운동 방법위반 사례

○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 3명의 주거지·비닐하우스 등을 호별방문하여 지지 호소하고, 조합원 1,720명에게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壬농협 조합장 당선자 불구속 기소(광주지검) 및